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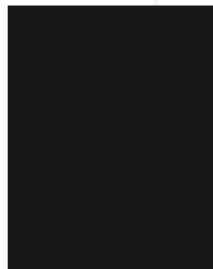
판 결

사 건


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
법률위반(사기), 사기

피 고 인



검 사



변 호 인



판 결 선 고

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.